

대전지방법원 2021. 1. 27 선고 2020가단138071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연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 2021. 1. 2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0. 4. 4. 접수 제159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철자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

판사조영범

별지